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(수시분) 동의안
심 사 보 고 서

2020년 9월16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8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9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 상정·의결(2020. 9.16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이미순)

□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(수시분)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【 재산의 취득 】

○ 화곡동 생활SOC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· · · · · · 1,975백만원

- 위 치: 가로공원로76길 39(화곡동 366-47)
- 취득내역: (매입) 토지 1필지 253.8㎡, 건물 1동 550.59㎡

3. 관계법령

○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○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제10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배금택)

가. 검토의견

○「화곡동 생활SOC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」의 건은

- 화곡동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건으로
- 위치는 화곡동 366-47 이며
-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임
- 사업규모는 대지 253.8㎡, 평면식 주차장이며
- 소요예산은 총 19억 7,500만원으로 매입비 15억 3,800만원, 신축 공사비 및 용역비 등 4억 3,700만원이며 시비 100%임

나. 종합 의견

○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
○ **화곡동 * 생활SOC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** 건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

※ 생활SOC(사회간접자본) : 사람들이 먹고, 자고, 자녀를 키우고, 노인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

○ 화곡1동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특히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에서 제공한 '10분동네 생활 SOC공급 3개년 계획수립 용역' 결과 강서구 20개 행정동 중 화곡1동이 주차장 취약 1순위로 나타나는 등 주차여건이 열악하여

※ 10분동네 생활SOC공급 3개년 계획수립 관련 자료 : 참고1

○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서구는 '2019년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 SOC 시범사업' 에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부지 매입 후 10면 내외의 주차면수를 갖춘 평면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

○ 이번 사업으로 저층 주택밀집지역인 화곡1동에 부족한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여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※ 붙임 1. 관련자료 1부
2. 관계법령 1부

붙임1 **관련자료**

❑ 강서구 주차장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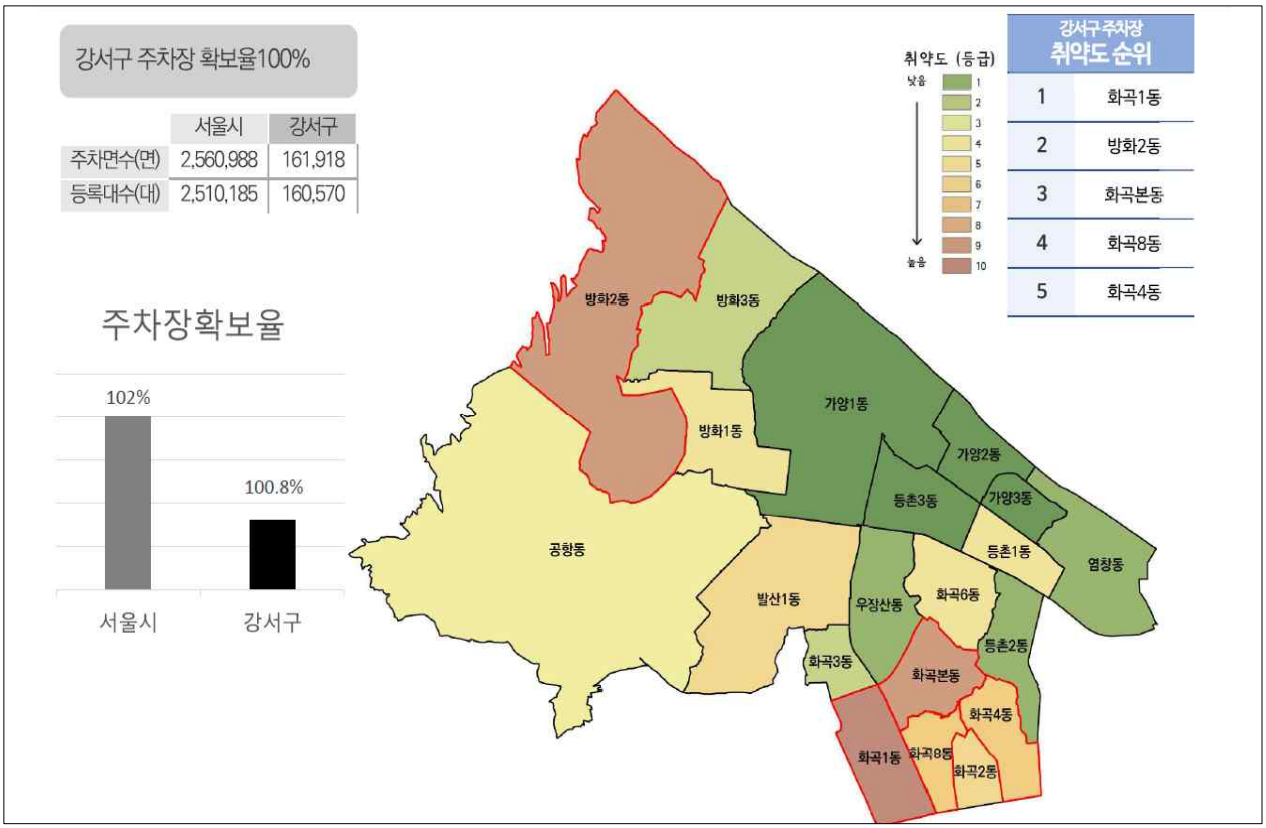

※ 서울시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'10분동네 생활SOC공급 3개년 계획수립용역' 중 발췌

❑ 사업대상지

붙임2 관계 법령

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(약칭: 공유재산법)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

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. 다만,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 관리전담 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.